

보험계약대출약정서(회사보관용)

본인은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약정합니다

제1조(거래조건)

- 대출기간: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 대출한도: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약환급금의 50~95% 이내(추후 변동가능)
 - 이자율
 - [금리연동형] ()% ~ ()% **매월변동** (산정 기준: 공시이율+ 가산금리 1.5%)
 - [금리확정형] ()% ~ ()% (산정 기준: 상품적용이율+ 가산금리 1.5 ~ 1.99% / 단, 최고금리 9.9% 초과 불가)
 - 이자납부시기: **매월 ** 일** (매월 대출해당일)
 - 이자미납시 처리기준: 이자미납시 해당이자를 매월 ** 일 원금에 가산하고, 그 이후 이자는 가산된 원금을 기준으로 부과함.
- ※ 금리확정형 상품적용이율
- 2013.03.31 이전 계약은 예정이율, 2013.04.01일 이후 계약은 표준이율, 2016.04.01일 이후 계약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 2019.07.10일 이후 가입된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체결된 경우신용정보원에 정보가 제공되며, 연간 대출이자 금액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산출에 포함합니다.
- ※ 변액 보험의 경우 청구금액이 지급 가능금액을 초과할 경우 회사가 지급 가능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 대출한도 기준은 상품특성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 가능합니다.
-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가입금액 등을 비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도산출
 - 연금보험등 특정상품의 경우 소득세, 추정세 금액이 감안된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도 산출
- ※ 즉시변제 및 상계 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2조부터 제8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확인(방문신청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안내물 수령방법	우편 / 이메일 / 문자서비스

본인은보험계약대출약정서 내용에대해설명을받았으며, 약정서의내용과같이약정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이자를일정기간미납하여해약환급금을초과하는경우보험계약이자동해지 될수있음을설명받았습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_____ (서명/날인)

※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문의사항은 당사의 콜센터(1588-6500)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정보		이자율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증권번호	상품명	금리구분	해약환급금 부리율(A)	가산금리 (B)	적용금리 (A+B)		

제2조(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 계약의 기본이 되는 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 유지되고 대출이자자가 정상 납입되는 한 만기시까지(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로 하되, 본인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금의 전액 혹은 일부(1만원단위)를 상환할 수 있다.

제4조(대출이율 및 이자납입 등)

-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이자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할 때에는 미납된 이자에 대해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당월 이자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 (3) 이자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영업일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
- (4) 이자납부일 이전에 이자를 납부한 때에는 이자납부일을 기준으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한다.
- (5) 이자납부는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ARS)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6) 은행자동이체로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부일로 하며, 회사는 다음 이체일에 재청구 한다.
- (7) 이자에 대한 계산방법, 납입방법 및 이자율(이자율의 변경포함)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본인은 회사가 안내장, 이메일, SMS, 알림톡 등 수단으로 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제반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이자납입 지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즉시변제)

- (1)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①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2. 8. 1.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2. 8. 1.부터 2005. 3. 31. 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④ 2005. 4. 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 (2) 제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한 계약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한다.

제7조(주소 등 변경통지)

-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단,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부대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회사가 부담한다.

제9조(대출계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지급일~철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보험계약대출 이자율),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법계약해지)

- (1)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2)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